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권영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55 발의연월일: 2024. 12. 3.

발 의 자:권영세·이성권·김소희

김재섭 · 서일준 · 고동진

안철수 · 구자근 · 김승수

강대식 · 인요한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게 우편·전화·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'스토킹행위'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, 사법경찰관과 법원이 각각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로써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 상대방 등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우편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등의 스토킹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 으므로 우편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 음.

이에 '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을 이용한 접근 금지'도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내용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 피해

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9조제1항 제3호).

법률 제 호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1항제2호 중 "전기통신"을 "전기통신 또는 「우편법」 제1조의 2제1호의 우편물"로 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중 "전기통신"을 "전기통신 또는 「우편법」 제1조의 2제1호의 우편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 사법경찰	제4조(긴급응급조치) ①
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	
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	
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	
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	
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	
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	
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	
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	
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	
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	
수 있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	2
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	
제1호의 <u>전기통신</u> 을 이용한	<u>전기통신 또는 「우</u>
접근 금지	편법」 제1조의2제1호의 우편
	물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	제9조(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
조치)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	조치) ①
원활한 조사·심리 또는 피해	
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	

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(이하 "잠정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
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 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 을 이용한 접근 금지

3의2. ~ 4. (생 략) ② ~ ⑦ (생 략)

<u>.</u>
1.•2. (현행과 같음)
3
<u>전기통신</u>
또는 「우편법」 제1조의2제1
호의 우편물
3의2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현행과 같음)